

청주지방법원 2018. 7. 19 선고 2018가단3557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농업협동조합중앙회

피고A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8. 7. 19.

주 문

1.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. 11. 27.자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접수 제9866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강부영

별지